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2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중교통 할인율 (안 제4조 별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의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는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8. 21. ~ 9. 1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충청남도소관부서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64)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시 민 교 통 과 장	임 성 영
	담 당 자	박 지 원 (041-746-6282)

[별표]

대중교통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제2조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1. 노인 (생략)</p> <p>2. 등록장애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할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분의 50</u></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분의 30</u></td> </tr> </tbody> </table> <p>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생략)</p>	적용대상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5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u>)	<u>100분의 30</u>	<p>[별표]</p> <p>1. 노인 (현행과 같음)</p> <p>2. 등록장애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할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분의 100</u></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삭제</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100분의 100</u></td> </tr> </tbody> </table> <p>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현행과 같음)</p>	적용대상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10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삭제</u>	<u>100분의 100</u>
적용대상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5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u>)	<u>100분의 30</u>												
적용대상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10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삭제</u>	<u>100분의 100</u>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책무)

-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통지원 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고령자	장애인 (정도)			국가유공자		
		만75세 이상 (100%)	계	심한 (100%)	심하지않는 (100%)	계	본인 (100%)	유족 (30%)
2020년	28,495	16,290	10,798	4,442	6,356	1,407	1,071	336
2021년	29,657	17,493	10,762	4,429	6,333	1,402	1,067	335
2022년	30,819	18,696	10,726	4,416	6,310	1,397	1,063	334
2023년	31,981	19,899	10,690	4,403	6,287	1,392	1,059	333
2024년	33,143	21,102	10,654	4,390	6,264	1,387	1,055	332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만75세 이상 제외

나. 추계의 결과

○ 교통지원 손실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출	일반회계	14,088,403	2,236,999	2,762,871	2,896,192	3,029,511	3,162,830
	만75세 이상	10,571,979	1,842,293	1,978,344	2,114,396	2,250,447	2,386,499
장 애 인		2,098,570	235,486	468,120	466,554	464,988	463,422
국가 유공자	본 인	1,295,699	145,524	289,170	288,086	287,002	285,917
	유 족	122,155	13,696	27,237	27,156	27,074	26,992

※ 산출기초 (2020년 기준)

○ 만75세 이상 : (1일 왕복요금×365일×인구)×경제활동(13%)×생존율(96.3%)×
버스이용율(82.5%)

$$\Rightarrow (3,000\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16,290\text{명}) \times 13\% \times 96.3\% \times 82.5\% \\ = 1,842,293\text{천원}$$

○ 장 애 인 : (1일왕복요금×183일×인구)×경제활동(5%)×생존율(96.3%)×
버스이용율(82.5%)

$$\Rightarrow (3,000\text{원} \times 183\text{일} \times 10,798\text{명}) \times 5\% \times 96.3\% \times 82.5\% = 235,486\text{천원}$$

○ 국가유공자 본인 : (1일 왕복요금×183일×인구)×경제활동(30%)×버스이용율(82.5%)

$$\Rightarrow (3,000\text{원} \times 183\text{일} \times 1,071\text{명}) \times 30\% \times 82.5\% = 145,524\text{천원}$$

유족 : (1일 왕복요금×할인율(30%)×183일×인구)×경제활동(30%)×
버스이용율(82.5%)

$$\Rightarrow (3,000\text{원} \times 30\% \times 183\text{일} \times 336\text{명}) \times 30\% \times 82.5\% = 13,696\text{천원}$$

3. 작성자 : 시민교통과장 임 성 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236,999	2,762,871	2,896,192	3,029,511	3,162,830	14,088,403	
국 비							
기 금	987,188	1,219,255	1,278,090	1,336,923	1,395,757	6,217,212	
도 비	131,312	162,181	170,006	177,832	185,658	826,989	
시 비	1,118,500	1,381,436	1,448,096	1,514,756	1,581,415	7,044,202	
세 출	2,236,999	2,762,871	2,896,192	3,029,511	3,162,830	14,088,403	
보조사업	2,236,999	2,762,871	2,896,192	3,029,511	3,162,830	14,088,403	
재원 조달	2,236,999	2,762,871	2,896,192	3,029,511	3,162,830	14,088,403	
의존 재원	소 계	1,118,500	1,381,436	1,448,096	1,514,756	1,581,415	7,044,202
	보조금	1,118,500	1,381,436	1,448,096	1,514,756	1,581,415	7,044,202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18,499	1,381,435	1,448,096	1,514,755	1,581,415	7,044,201
	지방세	1,118,499	1,381,435	1,448,096	1,514,755	1,581,415	7,044,201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100</u>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100분의 100</u>	
3. 국가유공자 5.18민주 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